

# 01

## 중소·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지원개요

### 지원배경 및 목적

☞ 코로나19 감염 확산 및 악화된 경기상황에서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어려운 여건으로,



- 취업 여건을 개선하고 실업자 고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채용보조금 지원

\* 현행 고용촉진장려금(참고) 지원 대상 및 요건, 방식 등을 한시적으로 확대·강화(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)

**시행기간 '20.7.27.~'20.12.31.(한시)**

### 지원대상 사업장

☞ 사업시행기간중 지원대상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장



-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직하여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시 지원

### 지원 요건 및 수준



지원요건

-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
-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
- 고용보험 피보험자(상용)가입 등



지원수준

- 근로자 1인당 최대 6개월간 지원**
- 중소기업 월 최대 100만원(6개월 600만원)
  - 중견기업 월 최대 80만원(6개월 480만원) (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의 80% 한도내 지원)
  - \* 정규직채용시 6개월 지원후 6개월 추가 지원 가능



지급주기

고용일 이후 다음달부터 매월 고용상황을 확인하여 1개월 단위로 지급

# 02

## 중소·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세부 지원요건

### 지원 대상 실업자(구직자)란?

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, 구직등록을 해야함

- ☞ **코로나19 이후 퇴사 등에 따른 취업촉진 대상자 :**  
'20.2.1. 이후 퇴사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
  - ☞ **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:**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
  - ☞ **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:** 중증장애인,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, 섬 지역 거주자
- \* 구직등록: 고용센터(Work-net),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구직의사를 등록

###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



사업주

-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
-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
- 새로 고용된 자가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했던 사업장과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
- 최저임금액 미만 지급 사업주



근로자

- 6개월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
- 비상근 촉탁근로자
-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 등



지원방지

**고용 전 1개월 + 고용 후 6개월**

▶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고용후 1년



### 신청 및 접수

- ☞ 1개월 고용 후 1개월 단위로 신청
- ☞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시스템([www.ei.go.kr](http://www.ei.go.kr))에서 신청  
- 「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」상 '특례지원' 표시하여 작성\*하고, 사업주 확인서 및 근로계약서, 급여지급 내역 등을 첨부하여 제출  
\* 신청서식은 '사업시행공고' 첨부양식 참조

### 지원 흐름도



### 지원대상자 확인 방법

- ☞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는 프로그램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
- ☞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는 필요시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으로 확인가능
- ☞ 코로나19 이후 퇴사 등으로 실업 중인 취업촉진 대상자는 구직등록 후 워크넷에서 아래 지원 대상확인서로 확인가능

#### [ 지원대상확인서 서식 ]

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 확인서

이름	홍길동
생년월일	1970.8.18.
최종 이직일(상용)	2020.5.1.
구직등록일	2020.5.3.
발급일자	2020.7.1.
발급기관	○○고용센터

문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 및 사업장소재 고용센터